

연구윤리규칙

제 정 2014.4.22 규칙 제214호
일부개정 2021.1.1. 규칙 제37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책무 및 이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재단의 연구활동과 관련 있는 모든 직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1.>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중복 게재·부당한 저자 표시 등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라 함은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출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라 함은 기여 없는 저자를 공동저자 또는 명예저자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재단에 알린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

③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재단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

제5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① 대표이사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②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규정의 내용 및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게 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정보의 기록 및 관리·보존) ① 모든 연구정보는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연구과제에 대한 기록 및 관리·보존은 해당기관의 방침에 따른다.

제2장 연구자의 윤리적 책무

제7조(인격 등의 존중) 연구자는 자신의 인격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연구자들의 인격, 독립성, 능력, 지식재산권 및 다양성 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제8조(진실성의 추구) 연구자는 진실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공정성) ① 연구자는 개인적 신념이나 사회적 지위를 떠나 재단의 연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

②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비밀유지)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이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공평한 대우) 연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자의 학연과 소속기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연구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제12조(연구자 상호관계) ①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데이터와 저자표시, 연구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③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행동요령) 연구자는 [별표]의 ‘연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연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재단은 부정행위 제보 접수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

③ 위원장은 연구윤리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재단 소속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

④ 대표이사는 재단 소속 직원 중 간사를 임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⑥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부정행위 제보 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3. 윤리규칙 위반자에 대한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소집과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련되어 있거나 본인이 참고인으로 된 경우
2. 위원 본인의 친족, 학연 및 소속기관 동료와 관련되는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7조(결과보고) 위원회의 의결결과는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제18조(의견의 존중) ①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

② 재심에서 다시 의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9조(부정행위의 검증주체)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재단에 있다. <개정 2021.1.1.>

② 대표이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

제20조(부정행위의 제보 및 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제보자는 정책연구실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재단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② 대표이사는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③ 제보자는 재단에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④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1조(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① 대표이사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② 조사대상자는 재단에 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제22조(비밀엄수)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조사팀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접수된 부정행위의 조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팀”을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팀은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팀장은 팀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다만 조사팀은 부정행위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구성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

③ 조사팀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재단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전체 팀원의 20%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 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1.>

④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팀의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팀 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팀은 제보자·조사대상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팀은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

제2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팀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조사결과서 제출) ① 조사팀은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조사결과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팀 명단
3.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내용 및 관련 연구과제
4.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조사대상자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제27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대표이사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1.>

② 제1항의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1.>

제5장 보 칙

제2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조사팀에 위촉된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지침 등)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

부 칙 <2014.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1.1.1.>

연구윤리강령

- 재단의 연구활동과 관련 있는 모든 직원(이하 “연구자”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한다.
 1.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
 2. 연구부정행위를 돕거나 지시하지 않는다.
 3. 타인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 모든 연구책임자는 건전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하여 다음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이행한다.
 1.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비 집행은 재단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따름으로써 법적,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준수한다.
 2. 연구노트 및 이와 유사한 연구기록물은 재단이 소유권을 가지는 유형의 자산이므로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공동연구 수행 시 연구 참여,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 활용 등에서 공동연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재단에서 발간된 연구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외부에 발표(게재)하거나 조사원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그 출처를 표시한다.
5. 연구결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재단과 경기도에 기여할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6.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법률과 재단 규칙 및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준수한다.